

제목 : 「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」
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「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」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시행 예정일 : 2021. 5. 31. _ 핀테크기업 대상 서비스는 2021. 7. 15.

■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p>제1조 목적 이 약관은 <u>은행권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"계좌통합관리서비스"를 이용하는 고객과 은행간의</u>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	<p>제1조 목적 이 약관은 "<u>계좌통합관리서비스"를 이용하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</u>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	<p>약관통합</p>
<p>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 1. "계좌통합관리서비스"(이하 "본 서비스"라 함)라 함은 고객이 <u>은행에</u>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(<u>신 설</u>)를 일괄조회하고,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(<u>신 설</u>)를 잔고이전·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</p>	<p>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 1. "계좌통합관리서비스"(이하 "본 서비스"라 함)라 함은 고객이 <u>금융회사에</u>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(<u>상호금융회사의 미지급출자금, 미지급배당금 포함</u>) 및 <u>카드 정보 등을</u> 일괄조회하고, 일정 잔고이하의 비활동성 계좌(<u>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고 현금으로만 보유한 계좌</u>)를 잔고이전·해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</p>	<p>약관통합 및 카드사반영</p>
<p>2. "잔고이전·해지"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(<u>신설</u>)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,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</p>	<p>2. "잔고이전·해지"라 함은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(<u>상호금융기관의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의 경우 해당 미지급금</u>)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, 계좌를 해지하고 해당 원리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</p>	<p>약관통합</p>
<p>3. "비활동성계좌"라 함은 최종입출금일(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)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. <u>다만, 한도대출약정계좌(마이너스통장), 세금우대계좌(구개인연금저축계좌 제외), 청약관련계좌, 당좌예금 등의 계좌는 최종입출금일(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)로부터 조회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.</u></p>	<p>3. "비활동성계좌"라 함은 최종입출금일(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)로부터 조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계좌를 의미합니다. <u>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 비활동성계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.</u> 가. <u>은행, 상호금융기관, 저축은행의 한도대출약정계좌(마이너스통장), 세금우대계좌(은행의 경우 구 개인연금저축계좌 제외), 청약관련계좌, 당좌예금 등의 계좌</u> 나. <u>상호금융기관의 압류·추심, 상속분쟁 등 조합이 지급불가 사유로 지정</u></p>	<p>약관통합</p>

<p>4. <생 략></p> <p>5. “소액비활동성계좌”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·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,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(이하 “<u>애플리케이션</u>”)에 게시합니다.</p> <p>6. ~ 9. <생 략></p> <p>10. “구개인연금저축”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 86 조(2013.1.1 삭제)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<u>(신설)</u> 개인연금저축으로 2000 년 6 월 30 일에 판매 종료된 상품입니다.</p> <p>11. <생 략></p> <p>12. “금융회사”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참가기관(은행, 상호금융사, 저축은행, 우체국, 금융투자회사 등)을 의미합니다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<생 략 ></p>	<p><u>한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</u> <u>다. 우체국의 퇴직급여 계좌대월 약정계좌, 세금우대계좌, 펀드연결계좌 등의 계좌</u> <u>라. 금융투자회사의 세제혜택상품계좌, 투자재산 보유계좌, 즉시 잔고출금 불가한 CMA 계좌, 유효 계약상품 보유계좌 등의 계좌</u></p> <p>4. <좌 동></p> <p>5. “소액비활동성계좌”란 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·해지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하며, 소액의 범위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(이하 “<u>애플리케이션</u>”이라 함)에 게시합니다.</p> <p>6. ~9. <좌 동></p> <p>10. “구개인연금저축”이라 함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 86 조(2013.1.1 삭제)의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<u>은행의</u> 개인연금저축으로 2000 년 6 월 30 일에 판매 종료된 상품입니다.</p> <p>11. <좌 동></p> <p>12. “금융회사”라 함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 중인 <u>은행, 다음 각 목의 상호금융기관(해당 상호금융기관의 회원을 포함), 저축은행, 우체국, 금융투자회사, 카드사 등을 의미합니다.</u> <u>가. 농업협동조합중앙회</u> <u>나.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</u> <u>다. 새마을금고중앙회</u> <u>라. 신용협동조합중앙회</u> <u>마. 산림조합중앙회</u></p> <p><u>13, “ 핀테크기업”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의미합니다.</u></p> <p><u>14. “비대면채널”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을 말합니다.</u></p> <p>② <좌 동></p>	<p>문구 명확화</p> <p>약관통합</p> <p>약관통합</p> <p>핀테크반영</p> <p>약관통합</p>
---	--	--

<p>제3조 이용대상 <생 략></p> <p>제4조 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은행창구,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(<u>“비대면채널”이라 함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.</u>)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<생 략></p> <p>제6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~ ④ <생 략></p> <p>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,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<u>이용등록이 자동해지됩니다.</u></p> <p>⑥ <u>휴대폰 등 동일한 기기에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이용하는 경우 기존 이용등록은 자동해지됩니다</u></p> <p>제7조 은행창구 이용방법 <생 략></p> <p>제8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(<u>신설</u>)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<u>본인</u>인증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 이용대상 <좌 동></p> <p>제 4 조 이용채널 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은행창구, 금융회사 및 <u>핀테크기업</u> 비대면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5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 <좌 동></p> <p>제6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① ~ ④ <좌 동></p> <p>⑤ 이용등록은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지할 수 있으며, 이용 등록 후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<u>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고객에게 알린 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정한 파기절차에 따라 기존 이용등록 정보는 삭제됩니다.</u></p> <p>⑥ <u>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변경할 경우 고객 정보보호를 위하여 변경된 모바일 기기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,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제7조 은행창구 이용방법 <좌 동></p> <p>제8조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이용방법 고객은 <u>고객이 거래하는</u> 금융회사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금융회사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<u>등</u>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<u>제9조 핀테크기업 비대면채널 이용방법</u> <u>고객은 핀테크기업의 비대면채널에서 해당 핀테크기업 인증 정책에 따른 본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서비스 이용등록 후 이용할 수</u></p>	<p>핀테크반영</p> 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수정</p> <p>핀테크반영</p>
--	--	---

<p><u>제9조 조회</u></p> <p>① 고객은 <u>제 5 조, 제 6 조, 제 7 조, 제 8 조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②고객은 제 4 조의 이용채널에서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은행창구에서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③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(<u>신 설</u>) 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.</p> <p>④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<u>은행창구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</u>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.</p> <p>⑤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 <u>은행</u>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.</p> <p><u>제10조 잔고이전.해지</u></p> <p>① 고객은 제 5 조, 제 6 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 2 조제 1 항 제 5 호의 “소액 비활동성계좌”에 한하여 잔고이전.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 (<u>신 설</u>)</p> <p>② 본 서비스에서는 <u>통장의 제시</u>, 인감의 날인,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고객의 신청만으로 계좌의 잔고이전.해지가 가능합니다.</p> <p>③ <생 략></p> <p>④ 본 서비스에서 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</u>를 잔고이전.해지 할 경우</p>	<p><u>있습니다.</u></p> <p><u>제10조 조회</u></p> <p>① 고객은 <u>제 4 조에 따른 이용채널에서 제 5 조부터 제 9 조까지 이용방법에 의한 본인인증 완료 후 비밀번호 확인 없이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 및 카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 8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금융회사가 계좌 및 카드정보 조회서비스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, 고객이 제 7 조에 따라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.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② 본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계좌 <u>및 카드정보</u>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합니다.</p> <p>③ 본 서비스에서는 고객이 <u>금융회사 창구 및 비대면채널에서</u> 거래가 제한되도록 요청한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.</p> <p>④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 <u>금융회사</u>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.</p> <p><u>제11조 잔고이전.해지</u></p> <p>① 고객은 제 5 조, 제 6 조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 2 조제 1 항 제 5 호의 “소액 비활동성계좌”에 한하여 잔고이전.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 <u>다만,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현금(CMA 평가 금액포함)만 보유한 계좌에 한하여 잔고이전.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본 서비스에서는 <u>통장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증권카드 등 거래 매체의 제시</u>, 인감의 날인,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고객의 신청만으로 계좌의 잔고이전.해지가 가능합니다.</p> <p>③ <좌 동></p> <p>④ 본 서비스에서 <u>제 1 항에 따라</u> 잔고이전.해지 할 경우 해당계좌에 등록</p>	<p>약관통합 및 카드사반영</p> <p>① 항목 반영</p> <p>카드사반영</p> <p>약관통합</p> <p>약관통합</p> <p>약관통합</p> <p>약관통합</p> <p>문구수정</p> <p>약관통합</p>
--	---	---

<p>해당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와 <u>현금카드</u>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본 서비스에서 정기에·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<u>제 4 조 및 제 5 조의</u>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<u>은행</u>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·해지가 가능합니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1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① <u>은행</u>은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(기관)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, 이용 또는 제공(전달)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.</p> <p>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(기관)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<u>은행</u>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. (<u>신 설</u>)</p> <p>제12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본 서비스에서 해지원리금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지계좌 <u>은행</u>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고시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.</p> <p>제13조 약관의 변경</p> <p>제14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<u>예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</u> 준용합니다. ① <u><신 설></u></p>	<p>된 자동이체와 <u>카드</u>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본 서비스에서 <u>은행, 상호금융기관, 저축은행, 우체국의</u> 정기에·적금 계좌를 해지요청 시 <u>제 5 조 및 제 6 조의</u> 이용방법에 따라 인증된 휴대폰번호와 해지계좌 <u>금융회사</u>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인증된 휴대폰번호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잔고이전·해지가 가능합니다.</p> <p><u>⑥ 다만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금융투자회사의 즉시출금이 불가능한 CMA 평가금액이 포함된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·해지가 불가능합니다.</u></p> <p>제12조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① <u>금융회사는</u>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업(기관)에서 스크린 스크래핑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, 이용 또는 제공(전달)하는 행위를 불허합니다.</p> <p>②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금융결제원과 제휴 혹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기업(기관)을 통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<u>금융회사는</u>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 않습니다. <u>다만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.</u></p> <p>제13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본 서비스에서 해지원리금을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지계좌 <u>금융회사</u>에서 인터넷뱅킹 등에 고시한 이용수수료가 적용됩니다.</p> <p>제14조 약관의 변경</p> <p>제15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<u>각 항에 준용합니다.</u></p> <p>① <u>은행, 우체국,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</u></p>	<p>약관통합</p> <p>약관통합</p> <p>문구수정</p> <p>약관통합</p> <p>문구수정</p> <p>약관통합</p> <p>약관통합</p>
---	---	---

<p><u>② <신 설></u></p> <p><u>③ <신 설></u></p> <p><u>부 칙 (2020.12.10)</u> <u>이 약관은 2020.12.22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, 제5조, 제6조의 시행일은 2020.12.10부터 시행합니다.</u></p>	<p><u>준용합니다.</u></p> <p><u>②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예(탁)금거래기본약관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(탁)금약관,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 등을 준용합니다.</u></p> <p><u>③ 금융투자회사, 카드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.</u></p> <p><u>부 칙 (2021.5.31.)</u> <u>이 약관은 2021. 5. 31.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제 2 조 제 1 항 제 13 호 및 제 4 조, 제 9 조의 핀테크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은 2021. 7. 15.부터 시행합니다.</u></p>	<p>카드사반영</p> <p>문구수정</p>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